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관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 2016. 4. 1

경상북도 승인 2016. 4.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체육(이하 “체육회”이라 한다)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중 기금으로 명시된 분
2. 독지가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 중 기금으로 명시된 분
3. 기금의 운영수익금
4. 기타 잡수입

제3조(기금의 사용) ①조성된 기금 및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기타 운영수익금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적립함을 원순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금을 제외한 이자 등 운영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체육진흥계획에 의한 사업 중 필요한 사업
3. 체육회 운영비

③기금은 규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명목으로 대여하거나 일시 전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예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관리위원회)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체육회에 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체육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 위원은 체육회 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2. 기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사항
3. 기금증식을 위한 국·공채 매입 등 자산취득에 관한사항

제7조(의회)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②표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표결권을 갖는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둔다.

제10조(회계관계직의 지정)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체육회 사무처장을 기금관리원, 총무부장을 분임기금관리원으로 지정한다.

제11조(기금운영계획) ①위원회는 매 회계년도의 기금운영계획을 확정 전에 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방법 및 규모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회계검사) 위원장은 기금업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회 감사로 하여금 서류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장부 등 비치) 기금관리원은 기금의 사용, 출납사항을 기록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등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예치증서 및 통장
3. 현금출납대장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14조(보고)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결정 및 집행사항은 차기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기금관리 등 회계관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체육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